

2004년도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안내

민간분야의 환경개선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분야별로 융자지원합니다.

1. 융자지원 대상

구분	관련 시설 및 사업
환경오염방지 시설설치자금 (설치·변경)	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,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,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시설(하부 적하방식으로의 차량 전환 및 접촉설비 개조 등을 포함),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약취제거시설
	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,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·억제하기 위한 시설
	소음·진동규제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
	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및 방지를 위한 시설
	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(또는 오·폐수병합처리시설) 및 동법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
	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
환경시설 설치대행자금	· 절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
	· 수도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.
	· 절수시설의 설치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물절약 투자대행업자
	· “환경시설효율성제고사업업무처리지침(환경부훈령 제499호)”에 의한 환경시설의 효율성제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
· “환경기술실용화촉진에관한규정(환경부고시 2002-105호)”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성공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	
환경기술개발 · 산업화자금	·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다음의 기술을 사용하여 산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
	-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
	- 실용신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로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이 이루어진 환경기술
	-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도입계약이 체결된 환경기술
	-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환경기술
	- G-7사업과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 개발된 환경기술
	-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(KT마크)로 인정된 환경기술
	-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·고시된 환경기술
	-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(NT)로 인증된 환경기술
	-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환경기술
	-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경기술
	- 기술개발·산업화자금중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받아 성공적으로 기술개발을 하여 융자심사위원회 완료심사를 통과한 환경기술
	- 국내기업이 선진국(G8)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환경기술
· 환경부고시 제 2000-104호(2000년 8월 30일)의 환경기술평가기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환경기술평가비용을 받고자 하는 자	

2. 지원조건

구분	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	환경시설 설치·대행자금	환경기술개발·산업화자금
용자규모	700억원		
지원한도 및 비율	부문별 : 50억원이하 (소요자금의100%이내) (운전자금은 지원액의 30%이내)	환경기술 개발부문 : 3억원이하 환경기술산업화부문 : 10억원이하 (운전자금 3억원이하 포함, 소요자금의 100%이내)	
금리(년)	변동금리		
대출기간	10년(거치3년)		

3. 신청서 문의 및 접수처

○ 문의 전화번호 : 환경관리공단 본사 및 지사

[본사 : 032)560-2235~7, 중부지사 : 031)701-9315, 영남지사 : 051)313-6444, 호남지사 : 062)944-9610]

○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emc.or.kr>) 자료실 및 사이버민원실 민원신청란 참조 바랍니다.

2004년 1월 2일

환경관리공단 이사장

순환형 폐자원관리체제 정착

환경부 대통령업무보고 중 순환형 폐자원관리체제 정착에 관한 부문중 일부만 정리한다.

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님비(NIMBY)현상의 심화로 매립지, 소각시설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. 생활폐기물은 소득증가에 따라 지속적 증가('98, 45→'02, 50천톤/일)으로 증가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건축폐기물 급증 등으로 최근 4년간 약 56% 증가('98, 146→'02, 228천톤/일)하고 있다.

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조기 정착,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kg이하(0.95kg/일)로 낮추고,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6% 감량(400만톤)할 계획이다.

향후 추진계획

생산자책임재활용(EPR) 제도 정착을 통한 제품 책임주의를 구현했다.

EPR 시행 원년(元年)성과를 종합 평가하고('04년 6월 민관 합동평가회), 품목별 수거·재활용 체계 개선 및 재활용의무량을 증대한다.

2003년 대비 전자 30%, 플라스틱 15% 등 재활용목표율을 제고한다. 2004년 이후 신규 대상품목(2004 필름류·형광등, 2005 휴대폰·오디오)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수거·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.

향후 폐기물 발생량, 재활용기술 수준, 재활용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EPR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.